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 신구조문대비표

2020. 2. 24. 제정 판 (시행 2019. 9. 1.) → 2023. 4. 3. 개정 판 (시행 2023. 3. 1.)

바뀜 2 · 신설 0 · 삭제 0 · 번호 변경 0

공식 원본 law.syu.ac.kr · <https://suleap.syu.my/r/393/compare?from=943&to=1428> · 내려받은 때 2026. 10. 21. 오후 3:45:32 · 밑줄은 바뀐 부분

현 행	개 정 안
제5조(조직) 본 영재교육원은 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위원회 및 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영재교육원 안에는 운영위원회,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 ② 영재교육원 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부, 대외협력부, 교육사업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제5조(조직) 본 영재교육원은 원장의 책임 하에 운영되며 위원회 및 부조직을 둘 수 있다. ① 영재교육원 안에는 운영위원회, 영재선정심사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을 둔다. ② 영재교육원 부조직으로는 교육연구부, 대외국제부, 교육사업부, 행정실을 둘 수 있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영재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삼육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재무실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원장이 겸임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제9조(운영위원회)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부총장, 영재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삼육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재무처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개정 2023-04-03>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한다. <개정 2023-04-03>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문 (참고본)

원본(law.syu.ac.kr)에 개정문이 없어, 직전 판과의 신구조문대비로 다시 만든 참고본입니다. 공식 문서는 공포 원문을 따릅니다.

「삼육대학교 부설 글로벌예술영재교육원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대외협력부"를 "대외국제부"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제9조(운영위원회) ① 영재교육원의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 ② 운영위원회는 부총장, 영재교육원의 원장, 부원장, 삼육대학교 기획처장, 사무처장, 산학협력단장, 평생교육원장, 재무처장, 외부전문가로 한다.
- ③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총장이 한다.
- ④ 운영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영재교육원 규정의 제정, 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영재교육원의 예산 및 결산에 의한 사항
 3. 그 밖의 영재교육원 운영에 관한 사항
- ⑤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3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